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을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변경된 예산과목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

-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 지정을 변경
 - 총무과 → 재무과, 총무과장 → 재무과장
-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
 - 관서당경비 →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”

제10조제1항중 “관서당경비”를 “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중 “총무과”를 “재무과”로 한다.

제30조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. (이하생략)</p>	<p>제10조(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)①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①(생략) ②물품의 매입, 수리, 수선,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)이 행하고 <u>총무과</u>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.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라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</p>	<p>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①(생략) ② <u>재무과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물품출납사무의 사전보고)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<u>총무과</u> 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30조(물품출납사무의 사전보고) <u>재무과</u>장</p>

關係法令拔萃

【지방자치법】

제21조(보고)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·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【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】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의 물품의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책임) ①도지사는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, 관리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(이하 “물품관리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,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(이하 “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)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